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정책 총괄 조정 및 해외홍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59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8명 7급 7명, 8급 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1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을 폐지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남부권 등 광역관광개발정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외 언론 보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

부에 출판 분야 해외수출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하며, 국립국악원에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6년 1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7. ~ 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예술정책실”을 “문화예술정책실·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예술정책실”을 “문화예술정책실·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조정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6.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7.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8.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9.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사·연구
11.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2. 한류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
1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15.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항에서 “국가 홍보”라 한다.) 총괄
16. 국가 홍보 관련 정부·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18. 국가 홍보 콘텐츠의 기획·개발
19.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운영 및 국가 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20. 온라인을 통한 국가 홍보전략 수립·시행
21. 한국과 관련한 해외 언론매체와의 홍보 협력 및 취재지원
22. 정상 외교 행사 등에 대한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23.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홍보에 관한 지원
및 협력
24. 국가 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25.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및 국제 이슈에 관한 해외 자료 수집·
분석
26. 해외 언론 분석 자료의 활용 및 범부처 지원
27. 정보통신기술 기반 해외 언론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제1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기획연수부·지식정보관리부 및 지식정보운영부”를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13.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기획
14.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16.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운영
1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1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46조제2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장(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후단 중 “55명”을 “59명”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후단 중 “40명”을 “36명”으로 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77”을 “741”로 하고, 일반직 계 “670”을 “73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1”을 “2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99”를 “650”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49”를 “5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30”을 “1,771”로 하고, 일반직 계 “1,504”를 “1,44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0”을 “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454”를 “1,40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26”을 “18”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74조 관련)

1. 제7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7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5급 이하	3

3. 제74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 립국악고등학교 · 국립국악중학 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국 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중앙박 물관 · 국립국어원 · <u>국립중앙도 서관 · 해외문화홍보원</u> · 국립국 악원 · 국립민속박물관 · 대한민 국역사박물관 ·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 <u>국립중앙도서관</u>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 과 · <u>문화예술정책실</u> · 종무실 · 국민소통실 · 콘텐츠정책국 · 저 작권국 · 미디어정책국 · 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을 둔다.	② ----- ----- <u>문화예술정책실 · 국제문 화홍보정책실</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생 략)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 <u>문 화예술정책실</u> · 종무실 · 콘텐츠	② ----- <u>문 화예술정책실 · 국제문화홍보정</u>

정책국·저작권국 및 미디어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u>책실</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차관보) ① (생 략)	제5조의2(차관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1의2. 해외문화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생 략)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1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8.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u><삭 제></u>
<u>19.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0.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1.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u>	<u><삭 제></u>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22.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23.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중
합계획의 수립·추진

24.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
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5. ~ 57. (생략)

<신설>

<삭제>

<삭제>

<삭제>

25. ~ 57.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
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부 내 국제문화교류업무 총
괄·조정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의 수립·시행

4.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6.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7.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8.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
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9.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문
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
립 및 추진
10.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사·연구
11.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2. 한류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
조체계 구축
1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
1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15.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
련 해외 홍보(이하 이 항에서

“국가 홍보”라 한다.) 총괄

16. 국가 홍보 관련 정부·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18. 국가 홍보 콘텐츠의 기획·
개발

19.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운영
및 국가 홍보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

20. 온라인을 통한 국가 홍보전
략 수립·시행

21. 한국과 관련한 해외 언론매
체와의 홍보 협력 및 취재지
원

22. 정상 외교 행사 등에 대한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23.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해외 언론 홍보에
관한 지원 및 협력

24. 국가 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
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25.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및 국제 이슈에 관한 해외 자
료 수집·분석

제13조(국민소통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해외문화홍보원 관리 및 지원

6. 삭제

7. ~ 34. (생략)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지식정보관리부 및 지식정보운영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

26. 해외 언론 분석 자료의 활용 및 범부처 지원

27. 정보통신기술 기반 해외 언론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제13조(국민소통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7. ~ 34. (현행과 같음)

제44조(하부조직) -----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

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기획연수부) ① (생략)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생략)	-----. 제45조(기획연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1. (현행과 같음) <u>12.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추진</u> <u>13.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기획</u> <u>14.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u>15.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u> <u>16.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운영</u> <u>1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u> <u>1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u> <u>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u>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현행
--	---

략)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46조의2(지식정보운영부) ① 지식정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2.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기획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5.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삭제>

국가전자도서관 기획·운영

6. 삭제

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표준화 및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9.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10.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11.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
의 운영

12.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
한 사항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삭 제>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해외 문
화홍보 정책, 재외공관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
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 협의, 해외언론 협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삭 제>

제51조(원장) ① 해외문화홍보원
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삭 제>

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3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1명을 두되,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삭 제>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각종 해외문화홍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기획·조정·지원

· 조사·연구 업무

2.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
원

4. 한국 소개 행사 개최 및 지원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
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5
명⁵⁹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
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59
명-----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신 설>

②

36명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 설>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
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
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7</u>	<u>741</u>	+64
•	•	•	
•	•	•	
일반직 계	<u>670</u>	<u>734</u>	+64
고위공무원단	<u>21</u>	<u>24</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9</u>	<u>650</u>	+51
전문경력관	<u>49</u>	<u>59</u>	+10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830</u>	<u>1,771</u>	-59
·	·	·	
·	·	·	
일반직 계	<u>1,504</u>	<u>1,445</u>	-59
고위공무원단	<u>10</u>	<u>7</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454</u>	<u>1,406</u>	-48
전문경력관	<u>26</u>	<u>18</u>	-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3